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660
----------	-------

제출연월일 : 2025. 9. 3.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 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세액”을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목을 삭제한다.

나. 가목 외의 주류로서 주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교육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 -----. ----- ----- ----- ----- 교육세액(제1호에 따른 세율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1천분의 5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호별	과세표준	세율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1	----- -----	1천분의 5(과세표준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천분의 10)
2·3	(생략)	(생략)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주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세액	100분의 10. 다만, 다음 각 목의 주류에 대해서는 100분	4	----- ----- -----	-----. ----- -----

		의 30으로 한다. 가. (생 략) 나. 「주세법」 제 8 조 제 1 항 제 3 호의 증류 주류 다. 「주세법」 제 8 조 제 1 항 제 4 호 가 목 의 주류. 다만, 같은 목 단 서 의 주류는 제 외한다.			-----. 가. (현행과 같 음) 나. 가 목 외의 주류로서 주 세의 세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주 류 〈삭 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

○ 수입 : 53,333억원

구 분 \ 연 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지출			해	당	없	음		
	소 계(A)							
수입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교육법 §5①)	133	13,300	13,300	13,300	13,300	53,333	10,667
	소 계(B)	133	13,300	13,300	13,300	13,300	53,333	10,667
총 비용(A-B)		△133	△13,300	△13,300	△13,300	△13,300	△53,333	△10,667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제5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율)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제5조제1항 (과세표준과 세율)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 개정 법률안이 ' 25.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①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5①)

○ 세수증 : 53,333억원

*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 세액 비중, 폐업률, 기업 개수 등을 고려하여 추계

-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의 세액 비중 $\Rightarrow$ 약 82%
- '24년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자의 세액 = 약 16,300억원
-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기업(약 60개)의 0.5% 세율(현행과 동일) 적용분
= 50억원($1\text{조원} \times 0.5\%$) $\times$ 60개 기업 = 3,000억원
- 연간 세수효과 : 16,300억원 - 3,000억원 = 13,300억원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임동호	전동표	윤수현	박홍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동호	044-215-4236	greg0305@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

I. 항목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II. 부문별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III.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감면 효율화,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

IV. 부대의견

○ 해당없음

V. 협의사항

협의시점	협의기관	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
-	-	해당사항 없음 (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

VI.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임동호	전동표	윤수현	박흥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동호	044-215-4236	greg0305@korea.kr

*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